

1. 머리말

일본 기업의  
독점금지법 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한  
양케이트 조사(요지)

독점금지법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자율적인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보급하고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주적인 대책에 대하여 지원하고 협조하여 왔다. 공취위는 매 5년마다 동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5년전 조사(1993년, 준수프로그램 실시 상황에 대한 양케이트 조사)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기업의 동 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파악키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국내업계에 참고가 되도록 상기 조사내용을 5년전 조사시와 비교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행하는 「公正取引」지 9월호에 게재된 것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2. 조사의 개요

5년전 조사에서와 같이 동경, 대판, 명고옥의 각 증권거래소에 상장(1부·2부)되어 있는 기업(2,372개사)을 대상으로 1998년 1월 하순, 재단법인 공정취인협회에 위탁하여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 1,020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회답률 43%). 5년전 조사시에는 2,063사를 대상으로 양케이트 조사를 하여 1,078사에서 회답을 얻은 것에 비하면 회신률이 약간 저조하였다(52% → 43%)

회신기업의 개요는 표1 및 표2와 같다.

< 표1 회신기업의 업종 >

업종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전체
기업수	559	92	89	83	74	123	1,020
(%)	(55)	(9)	(9)	(8)	(7)	(12)	(100)

(주) 「기타」의 내역은 운수업(42사), 용역업(38사), 전기·가스·수도업(15사), 부동산업(13사), 광업(6사), 통신업(5사), 농림수산업(4사)임.

< 표2 회신기업의 자본금 규모 >

자본규모	10억엔 미만	50억엔미만 10억엔이상	50억엔이상 100억엔미만	100억엔이상 500억엔미만	5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1,000억엔 이상	전체
기업수	67	319	185	338	51	60	1,020
(%)	(7)	(31)	(18)	(33)	(5)	(6)	(100)

## 8 조사결과의 개요

### (1) 독점금지법 준수프로그램의 작성, 실시상황에 관하여

#### 포인트 1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유무)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함)은 전체의 58%, 준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이하 「예정기업」이라 함)은 13%였음.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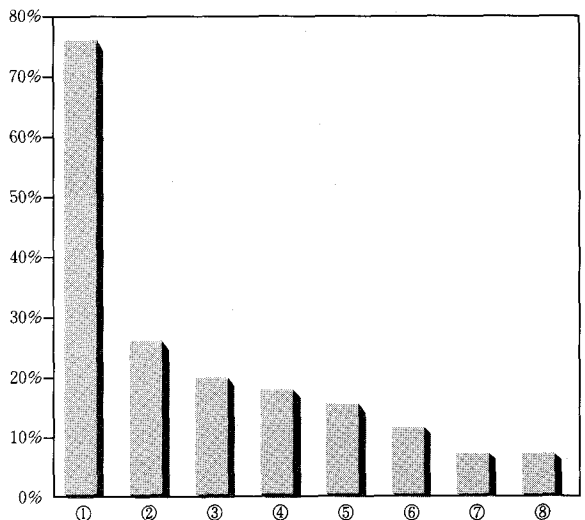
1. 실시기업, 예정기업의 비율을 5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모두 약간 저하되었음(실시기업 61% → 58%, 예정기업 18% → 13%).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의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업종별로 보면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업종으로 금융업, 건설업 등을 열거할 수 있음. 실시기업과 예정기업을 합한 비율을 보면, 금융업 91%, 건설업 86%로 되어있고 이들 업종에 있어서는 실시기업의 비율도 높음(금융업 85%, 건설업 76%).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이외의 업종에서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실시기업 및 예정기업을 말함. 이하 동일)의 비율은 도매업 61%, 소매업 61%, 서비스업 45%, 운수업 38%, 부동산업 23%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운수업 및 부동산업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음.

3.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고, 실시기업의 비율에서 보면 이 경향이 보다 현저함.
4.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한 기업은 회신기업의 29%였지만 그 이유로서 자사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적다고 열거한 것이 제일 많았고(78%),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성(인식)이 없음을 열거한 것이 27%였지만(표1. 참조), 5년전 조사보다도 감소하였음(33% → 27%).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행 못하는 기업은 5년전 조사에 비하여 반감하고 있는데(12% → 6%) 이것은 공취위가 독점금지법 준수프로그램의 작성 및 실시의 중요성에 관하여 보급·개발에 노력한 결과였으며,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기업의 관심과 지식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됨.

#### < 표.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을 하지 않는 이유 >



- ① 업무의 내용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적다.
- ② 필요성의 인식이 없다.
- ③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다.
- ④ 업계단체에 프로그램을 맡긴다.
- ⑤ 업계단체, 타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 ⑥ 인력·비용을 배분치 않는다.
- ⑦ 독점금지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 ⑧ 프로그램 작성의 방법을 모른다.

**포인트 2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실시기업의 대부분이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의 작성·개정(실시기업의 70%), 독점금지법에 관해서 설명회·사내연수의 실시(실시기업의 66%), 그리고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사내체제에 관한 정비의 강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해설**

- 기타의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독점금지법 준수에 책임을 지는 사내조직의 정비·신설이나 사장명의 등에 의한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통지·훈시 등이 있음.
- 5년도 조사에서 회신이 있었던 실시기업에서 계속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5년도 조사 당시(1993년 9월)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업은 36%였음.  
프로그램 강화내용을 보면 독점금지법의 설명회나 사내연수의 총실(42%),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의 총실(30%), 독점금지법 준수에 책임을 가진 사내조직의 총실(23%) 등이 열거되고 있음.
- 독점금지법 준수가 회사방침으로 되어있는 기업의 비율은 실시기업 중 88%였다. 그 방법은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 가운데 독점금지법 준수가 회사의 방침임을 사장의 명의로 분명히 하였다」, 「정례회의 등의 장소에서 독점금지법 준수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관리직사원에게 훈시·설명하였다」, 「독점금지법의 준수가 회사의 방침임을 사장명의 혹은 임원명의로 통보」 등이 다양하게 예시되고 있음.
- 또한, 실시기업의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사내체제에 관하여 5년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와 의문의 발생을 대비한 상담장구의 설치, 사내문서 등을 독점금지법 준수의 관점에서 점검하거나 보전하고 관리하는 관리체제는 거의 5년전과 같지만(상담체제 83% → 84%, 사내문서 등의 관리체제 50% → 55%), 감시체제의 정비는 큰 진전을 보였음(24% → 42%).  
더욱이 실시기업 가운데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며(27% → 33%), 그 가운데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사원에 대한 감봉, 해고 등의 제재조치를 세우고 있는 기업은 39%를 점하고 있었음.

**포인트 3(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실시기업의 82%가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거나 또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설**

- 실시기업의 6%가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나 또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독점금지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40%).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37%),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적기때문에(29%),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인원, 비용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26%) 등이 열거되고 있었음.  
5년전 조사에서는 반수 이상(57%)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사내주지가 불충분함을 원인으로 보던 것이 금회의 조사에서는 11%로 감소되었음. 이것은 각 기업에서 독점금지법의 준수프로그램을 위한 사내체제의 정비가 진전되어 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 작성·개정시기에 관하여**

**포인트 4 (독점금지법 준수준수메뉴얼의 작성상황)**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 작성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기업 가운데 69%의 기업이 준수메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해설**

1. 5년전 조사에서 프로그램 실시기업 중에서 작성율이 63%였음을 감안하면 실시기업에서 준수메뉴얼 작성은 진전되었다고 보여짐. 예정기업에 관하여 보면 39%의 기업이 금후 준수메뉴얼의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고,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에서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을 작성한 기업의 비율이 제일 높고, 실시기업 중에서는 95%, 회신기업 중에서는 80%를 점유했음.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을 작성한 기업의 비율은 규모가 클수록 높았음.

2.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의 작성시기에 관해서 보면 독점금지법 준수메뉴얼을 기히 작성하고 있는 기업가운데 50%는 1991년에서 1992년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1991년 7월,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지침」이 발표된 것이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됨.

특히 금융업에 있어서는 1993년 이후에 작성한 기업이 70%를 점유하고 이 시기 이후 준수편람이 작성이 크게 진전된 것을 알 수 있음.

3. 독점금지법 준수편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보면 독점금지법 준수편람은 사내에서 작성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작성시에는 공정취인협회 발행의 「준수프로그램 작성 안내」 등의 준수양식이나 타사 등의 준수편람을 참고로 하고 내용은 고문변호사·감사역, 공정취인위원회 등과 상담받는 경우가 많았음.

**< 표2. 독점금지법 준수편람 작성시의 유의점 (회답기업수 410사) >**

유의점	회답수
업무와 관계가 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300
분량을 배려하였다.	205
용어·말씨를 공부하였다.	163
Q&A 방식으로 하였다.	157
영업부문·구매부문 등 부서별로 작성하였다.	124
삽화를 넣다.	112
심결·판례 등의 사례를 넣다.	60
작성시에 각 부문의 의견을 구하다.	60
창조는 엄선하여 기술한다.	52
신입사원용·관리직용 등 수준별로 작성한다.	15

**포인트 5 (독점금지법 준수편람의 개정상황)**

이미 독점금지법 준수편람을 작성한 기업 가운데 준수편람을 개정할 바가 있는 기업은 29%,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은 21%였다.

**해설**

1. 준수편람 개정이유로는 독점금지법 개정·각종 가이드 라인 개정에 대응함이 가장 많았으며(82%), 최근의 심결·판례 등 사례의 추가 등(26%),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19%)로 되어 있음.

**끝대면서**

기업에서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식은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최근 자유화,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금융업에서 1993년 이후 프로그램 운영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금후 규제완화의 진전이 보이는 제분야에서도 자기의 책임원칙에 따라 기업행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법령준수의 요청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일층 충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5년전(1993년)조사와 같이 금회의 조사에서도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사가 대규모의 기업에 비하여 저조하기 때문에 한층 더 보급·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취위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미연방지·재발방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준수프로그램의 작성·실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계속해서 보급·개발에 노력하는 외에도 기업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관해서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